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
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주호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, 연구활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수당을 매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정액수당 금액 인상(안 제2조 개정)
-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 회원에게 지급되는 정액수당을 매월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
일부개정령안

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180만원”을 “20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수당의 종류와 범위) ①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(이하 “회원”이라 한다)에게는 정액수당으로 매월 <u>180만원</u> 을 지급한다.	제2조(수당의 종류와 범위) ①----- ----- ----- <u>200만원</u> -----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883